



강북구의회 소식

바른의정, 열린의정을 실천하는 강북구의회

홈페이지 www.gbc.seoul.kr

트위터 [www.twitter.com/gangbukcouncil](https://twitter.com/gangbukcouncil)

페이스북 www.facebook.com/gangbukcouncil

강북구의회, 의원단 일일 병영체험 행사



강북구의회(의장 박성열)는 의장을 비롯한 의원6명과 직원 등 15명이 육군 제2188부대 220보병연대 2대대를 방문 지난 7월25일(목) 오후4시부터 2시간 동안 일일 병영체험 행사를 가졌다.

2013년도 하반기 의회운영 일정

• 회기 일정

회 차	회 의 기 간	주 요 안 건	비고
제172회 임시회	8.30(금) ~ 9.10(화)	- 조례안, 기타 안건	- 8. 30(금) 1차 본회의 - 8. 31(토)~9. 9(월) 상임위 - 9. 10(화) 2차 본회의
제173회 임시회	10.8(화) ~ 10.15(화)	- 구정질문·답변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 - 조례안, 기타 안건	- 10. 8(화) 1차 본회의 - 10. 9(수)~10.14(월)상임위 - 10.15(화) 2차 본회의
제174회 임시회	10.31(목) ~ 11.6(수)	- 구정질문·답변 - 조례안, 기타안건	- 10.31(목) 1차 본회의 - 11. 1(금) 2차 본회의 - 11. 2(토)~11. 5(화)상임위 - 11. 6(수) 3차 본회의
제175회 제2차 정례회	12.2(월) ~ 12.16(월)	- 2013년도 제2회 추경안 - 2014년도 예산안심의 - 조례안, 기타안건	- 12. 2(월) 1차 본회의 - 12. 3(화)~12.15(일)상임위 - 12. 9(월)~12.11(수)예결위 - 12.16(월) 2차 본회의

※ 회의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
제6대 강북구의회 하반기 의안 처리 현황

• 기 간 : 2012. 7. 12 ~ 2013. 7. 8

제6대 강북구의회 하반기에는 총 122건의 의안을 접수하고 117건을 처리하였다. 이중 조례안은 44건이 접수되어 총 39건을 처리하였으며 결의안 및 예산안 등 기타 안건은 78건을 접수하고 78건을 처리하였다. 특히, 조례안은 총 39건 중 의원발의가 11건으로 28.2%를 차지하는 등 구민생활과 밀접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노력하였다.

구 분 종류별	접 수	처 리	처 리 내 역						미처리 (계류·보류)	비 고	
			가 결			부 결	폐 기	철 회			
			계	원안	수정						
총 계	122	117	116	85	31	0	0	1	5		
조 례 안	소 계	44	39	38	11	27	0	0	1	5	
	의원발의	17	12	11	2	9	0	0	1	5	
	위원회 제안	0	0	0	0	0	0	0	0	0	
	구청장제출	27	27	27	9	18	0	0	0	0	
결의안 예산안 등	78	78	78	74	4	0	0	0	0		

• 보류안건

-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참여자치 기본 조례안
(행정보건위원회, 구본승의원, 최선의원, 의안번호 274번)
- 서울특별시 강북구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(행정보건위원회, 이순영 의원, 의안번호 290번)
-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·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
(복지건설위원회, 박문수 의원, 의안번호 292번)
- 서울특별시 강북구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(행정보건위원회, 강남연 의원, 의안번호 356번)
-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내의 신문·복권판매대·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·계약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
(복지건설위원회, 박문수 의원, 의안번호 362번)

강북구의회 방청 안내

“강북구의회는 구민 여러분께 활짝 열려 있습니다.”

• 일반 방청

- 일반구민을 위한 방청으로 안내실에 주민등록증을 제출하면 방청권 교부
- 1일 방청인원은 20명으로 제한

• 단체 방청(10인 이상)

- 개인별로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본인여부를 확인
- 방청인원이 많은 경우에는 인원 및 시간을 제한
- ※ 방청신청은 강북구의회 홈페이지(www.gbc.seoul.kr) 참여마당에서 신청 가능

열린의회 회의공개원칙에 따라 질서유지에 지장이 없는 한 누구나 방청이 가능합니다. 다만, 질서유지기관 및 집단민원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에 지장을 줄 경우 제한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문의 : 강북구의회사무국 901-4510